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공 보

**제531호 2016. 4. 6. (수)**

선 결	기관의 장

## 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6 - 34호 도로명주소 고시 ..... 2

## 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6 - 362호 주상-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공시송달 공고 ..... 4  
 거창군 공고 제2016 - 37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..... 6  
 거창군 공고 제2016 - 382호 도로심의회 안건 공고 ..... 7  
 거창군 공고 제2016 - 386호 거창군 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395호선) 결정(변경) 열람 공고  
 ..... 8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거창군 고시 제2016 - 34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4. 7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772 외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붙임 : 도로명주소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
1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039-1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772	2009-04-01	2016-04-07	행정구역명 장팔리가 반영된 도로
2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77-8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길 378	2009-04-01	2016-04-07	중산마을로 가는 길임이 반영된 도로
3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958-1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1길 5	2009-04-01	2016-04-07	거기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
4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689, 1687-1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온곡길 308-23	2009-04-01	2016-04-07	겨울에도 따듯하고 아늑하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
5	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478	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신기길 59-2	2009-04-01	2016-04-07	마을 가운데 샘물 맛이 좋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
6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99-1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410	2009-04-01	2016-04-07	원학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
7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229-1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빠재로 223-20	2009-12-28	2016-04-07	고제면에 위치한 빠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
8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76-5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감악산로 888	2011-12-07	2016-04-07	감악산을 넘어 가는 도로
9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892-10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신기길 42-17	2009-04-01	2016-04-07	100여년 전 둔동마을에서 떨어져 나와 밭들에 새로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주상-한기리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, 소유자의 주소·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를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16. 04. 04.

### 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주상-한기리1 국도건설공사
2.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
3. 보상수탁자 : 한국농어촌공사 사장
4. 공고기간 : 2016. 04. 04 ~ 2016. 04. 19
5. 공고사유 : 소유자의 주소, 거소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 불가능
6. 보상의 시기 및 계약체결 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일간
7. 보상의 방법 및 절차 :
  - 가. 협의기간 및 방법
    -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 보상사업부에 서면통지

#### 나. 보상의 시기, 방법 및 절차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,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해당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(은행계좌입금)할 예정입니다.

단, 소유권 이외의 권리(압류, 가압류, 근저당, 지상권등)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

다.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

-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(일반용)
- 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1부(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)
- 은행통장사본 1부(보상금수령용)
-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(보상금청구서 등 공사양식에 날인)

#### 8. 계약체결 장소

- ▶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 보상사업부
- ▶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490(현장사무실) 학림건설  
(☎ 055-945-6111)

#### 9. 부동산 표시 및 보상금액 : 붙임참조 및 담당자 문의(061-338-6145)

10. 기타 사항 :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 본사 투자사업처 보상사업부(061-338-6145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공시송달 토지조서 1부. 끝.

##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9조 제4항(건설업 등록사항신고) 및 제81조(시정명령)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(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)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등록말소)하였으나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년 04월 05일

# 거 창 군 수

### 1. 공고대상

업 체 명	대 표 자	영업소재지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처분사유)	처분일자
하나에너지	홍**	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73 상가 110호	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(부산강서2009-24-01)	등록말소 [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불응]	2016. 03.31

2. 공고기간 : 2016. 04 05~ 2016. 04. 20.(15일간)

3. 공고장소 : 거창군 홈페이지 및 읍·면 게시판, 거창군 공보

### 4. 공지사항

가.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[www.kiscon.net](http://www.kiscon.net))에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나. 아울러,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(심판청구기간)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또한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과(☎ 055-940-35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도로심의회 안전 공고

2016년 2/4분기 『거창군 도로관리심의회』에 상정할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이 있는 자는 『도로법 시행령』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(굴착)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04월 05일

거창군수

1.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: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(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)을 신설, 개축,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
2. 제출기한 : 2016년 4월 25일
3. 도로점용사업계획서 제출 : 거창군청 건설과
4. 문 의 처 :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(☎ 940-3557)

## 거창군 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3-95호선) 결정(변경) 열람 공고

경상남도 고시 제1977-256(1977.4.25.)호로 결정된 「군계획도로 (소로3-95호선)」에 대한 변경 결정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2016. 04. 05.

### 거 창 군 수

#### 1. 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##### 가. 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3	95	6.0	국지 도로	64	거창읍 송정리 60-5	거창읍 송정리 52-1	일반 도로	경고 제256호 (1977.04.25.)	
변경	소로	3	95	6.0	국지 도로	59	거창읍 송정리 60-5	거창읍 송정리 52-1	일반 도로	경고 제256호 (1977.04.25.)	선형 변경

##### 나. 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노 선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3-95호선	○ 선형변경 - 당초 : L=64.0m B=6.0m - 변경 : L=59.0m B=6.0m	○ 차량 주행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 직선화에 따른 선형 변경



2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3.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: 거창군 도시건축과

4. 의견 제출방법 :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(도시건축과장)에게 서면(우편번호:670-870/주소: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9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군관리계획(교통시설)결정(변경)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
- 성 명 :
- 연락처 :
- 기타 참고사항 :